



제276회(정례회) 제3차본회의
2008년 12월 23일(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23.
교육사회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자 : 김광수 의원 외 8인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8년 11월 28일
- 회부일자 : 2008년 12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 12. 16 제27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광수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안 제3조)
 -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해야함(안 제3조)
 - 도에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설치(안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15명 이내로 구성(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 운영 할 수 있음(안 제12조)
 - 도지사는 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음(안 제22조)
 -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안 제24조),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특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 ※ 조례안 : 6장 27조 부칙 2조로 구성

Ⅲ.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

가. 제정 동기

- 동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충청북도의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임.

나. 현행 위원회 운영 실태

- 충청북도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하여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2003.6.2) 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별첨)은 충북과 전남,경남이 조례를 미지정 상태임

다. 검토결과

- 동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는 있지만 충청북도에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광역자치단체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현황

시도별	법규명	제정일	공포일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보육조례	1999.05.10	1999.05.10	
부산	부산광역시보육조례	2005.06.08	2005.06.08	
대구	대구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11.10	2005.11.10	
인천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09.26	2005.09.26	
광주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2005.04.01	2005.04.01	
대전	대전광역시보육조례	2007.10.05	2007.10.05	
울산	울산광역시보육조례	2007.10.09	2007.10.09	
경기	경기도보육지원조례	2005.06.13	2005.06.13	
강원	강원도보육조례	2006.12.29	2006.12.29	
충북	-	-	-	추진중
충남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2007.01.10	2007.01.10	
전북	전라북도영유아보육조례	2006.05.12	2006.05.12	
전남	-	-	-	추진중
경북	경상북도보육조례	2007.07.19	2007.07.19	
경남	-	-	-	추진중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시설설치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2006.04.12	2006.04.12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방과 후 보육”이라 함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는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도 보육시설연합회장, 도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업무 담당과장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5. 기타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종사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12조(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상담, 또한 종사자들의 취업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보

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기준)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 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필요 인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취약보육의 지원 등

제20조(취약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시간연장형 및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이하 "취약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취약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도지사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 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비 용

제2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4. 센터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7.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운영비

8.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10.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의 정지·취소,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장 보 칙

제24조(지도·점검)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도지사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평가) 도지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및 충청북도보육정보센터에 관한사항 (위탁, 종사자 임면,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와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7조 (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0.17]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0.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보육정보센터(이하 "중앙보육정보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지방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3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중앙보육정보센터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당해 보육정보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각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

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③보육정보센터의 위탁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변경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18조 (보육에 관한 연구업무 등의 위탁)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업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보육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정보의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재 개발 및 연수
 4. 보육시설 평가척도의 개발
 5. 그 밖에 보육정보센터, 교육훈련시설 등의 평가 등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기준 등의 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당

해 업무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4.13]